

5. 건설기계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공사현장별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발급 받아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자에게 제출해야 함.

■ 관련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 시행규칙 제34조의4

- 현장별보증 예외(대여계약별 보증이 가능한 경우)
 - 도급금액이 1억원 미만이고 공사기간이 5개월 이내인 경우
 - 하도급금액이 5천만원 미만이고 착공일부터 준공일까지 공사기간이 3개월 이내인 경우
 - 당해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하도급금액 산출내역서 포함)에 기재된 건설기계 대여 금액의 합계금액이 400만원 미만인 경우
-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 면제 요건
 - 발주자, 건설업자 및 건설기계 대여업자가 직불 합의 (현장별보증,대여계약별보증 모두 해당)
 - 대여계약별 보증 시 1건 대여계약 금액 200만원 이하

■ 행정처분 위반내용 및 처분근거

위반내용	행정처분	처분근거 조항 및 조문
건설기계 대여 대금 지급보증서 교부 불이행	시정명령	건설산업기본법 제81조 제4호 법 제68조의3제1항에 따른 건설업자로서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영업정지 2개월 또는 과징금	건설산업기본법 제82 제1항 제8호 법제68조의3제1항에 따른 건설기계대여 대금 지급 보증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6. 국가기술자격증 등의 대여 위반

위반내용	행정처분	처분근거 조항 및 조문
법 제21조의2 (국가기술자격증등의 대여 금지)	영업정지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의 제2호 국가기술자격증 또는 건설기술경력증을 다른자에게 빌려거나 빌려준 경우
	등록말소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6호 법제21조의2를 위반하여 국가기술자격증 또는 건설기술경력증을 다른자에게 빌려 건설업의 등록기준을 충족시키거나 국가기술자격증 또는 건설기술경력증을 다른자에게 빌려주어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미달한 사실이 있는 경우

7. 국세청 폐업사실 확인

■ 등록말소(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12호)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국세청에 폐업신고 후 폐업한 경우

8. 전문건설업 실태조사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에 따른 건설업 등록기준(자본금, 기술능력, 시설·장비 등) 적합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서 초기경보시스템을 이용 의심업체를 선정(연1회이상)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통보 등록기준 심사후 미달시 행정처분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건설업의 등록말소 등)】**

■ 관련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건설업자의 실태조사 등)제1항 및 제7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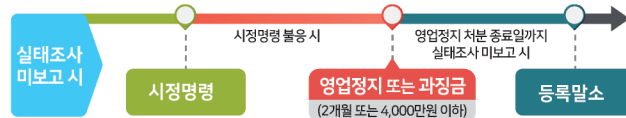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중략)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사업자의 경영실태를 조사하게 하거나 공사 시공에 필요한 자재 또는 시설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연 1회 이상 건설사업자의 경영실태 조사를 실시하거나, 지방 자치단체의 장에게 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 조사방법

- 자본금 : 조사대상업자의 조사일 직전연도의 정기연차 결산일 기준의 재무제표 및 증빙자료 일체에 대한 건설업 등록기준 자본금 적합여부 심사
- 기술능력 : 전년도 실태조사 조사일 이후부터 조사일 현재까지 고용보험 가입여부 및 자격증 등 기타 증빙자료에 대한 기술인 적합 여부 심사
- 시설·장비 : 조사일 현재 업종별 시설·장비에 대한 적합여부 현장사실조사 심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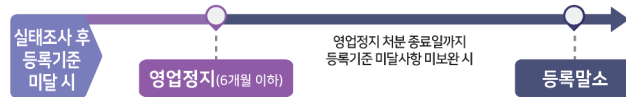


■ 실태조사 미보고시 행정처분 절차 및 처분근거



위반내용	행정처분	처분근거 조항 및 조문
실태조사 등의 보고 불이행	시정명령	건설산업기본법 제81조 제9호 정당한 사유없이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시정명령/지시불응 (등록기준 적합여부 실태조사 등의 보고 불이행)	영업정지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제1항 제5호 정당한 사유없이 법 제81조의 규정에 따른 시정명령 또는 시정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실태조사자료 미보고로 영업정지 후 처분종료일까지 미보고한 경우	등록말소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8의 2호 제81조제9호의 위반으로 인하여 제82조제1항 제5호에 따라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그 처분의 종료일까지 제49조 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 실태조사 자료제출 후 등록기준 미달시 행정처분 절차 및 처분근거



위반내용	행정처분	처분근거 조항 및 조문
실태조사 보고후 등록기준 미달시	영업정지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제3호 법 제10조에 따른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미달한 사실이 있는 경우
	등록말소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3의 2호 법 제10조에 따른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미달하여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후 그 처분의 종료일까지 등록기준 미달사항을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

이것만은 꼭 알아두자

[건설산업기본법]



문의_ 군산시청 도시계획과

☎ 063) 454.3492

1. 건설업의 기재사항 변경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 2 제2항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업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의 기재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1~5)이 변경되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30일 이내**에 기재사항의 변경을 신청해야 함.

1. 상호, 2. 대표자, 3. 영업소 소재지, 4. 법인(주민)등록번호, 5. 국적 또는 소속국가명

- **관련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2 제2항, 시행령 제12조의3, 시행규칙 제9조

■ 구비서류

기재사항변경신청서(별지5호서식),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 대표자·상호변경 : 사업자 등록증 사본, 소재지 변경 :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무실 내·외부사진 등

■ 처리절차



※ 건설업 관리규정에 따라 사무실 적격여부는 해당 사무실 방문해야하나 제출받은 서류의 심사결과 사정을 고려하여 방문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이를 생략할 수 있음

■ 심사결과 부적격시 처리방안

- 등록기준에 맞게 조치를 취한후 민원신청 재접수 요청

■ 행정처분 [변경후 30일내 미신고]

위반내용	행정처분	처분근거 조항 및 조문
법 제9조의2 제2항을 위반한 경우 (30일 내에 기재사항의 변경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1차 30만원 2차 50만원 3차 50만원	건설산업기본법 제100조 제1호 감경사유 - 위반행위가 건설업자의 경미한 과실 또는 부주의로 발생한 경우 - 3년 이내에 같은 법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



2. 건설업의 교육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 3 규정에 의거 건설업을 등록한 자는 건설업을 등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건설업 윤리 및 실무 관련 교육을 8시간 이상 받아야 함.(건설업 신규등록 업체는 의무적으로 교육을 받아야하며,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됨)

- **관련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3, 시행령 제12조의4

■ 교육대상 및 위반시 처분근거

위반내용	행정처분	행정처분	처분근거 조항 및 조문
신규등록자 (의무사항) (업종추가 제외)	(법인) 법인등기부등본상 임원(대표자) 1명 이상 (개인) 대표자	과태료 1차 100만원 2차 100만원 3차 100만원	건설산업기본법 제99조제12호 건설업자가 법 제9조의3제1항에 따른 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경우
영업정지처분 중에 있는 건설업자 (의무사항)	(법인) 법인등기부등본상 대표 또는 임원	영업정지 기간 감경 ↓ 최대 15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별표6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건설업자가 교육수료증을 제출한 날부터 영업정지기간 15일 감경 · 대표 교육이수 시 15일 · 임원 교육이수 시 1인당 5일 감경 · 감경기간 최대15일을 초과할 수 없음

■ 건설업 교육기관 (시행규칙 제10조의 3, 10조의 4)

대한건설협회			
대표자	소재지	교육장소	연락처
김상수	서울시 강남구 언주로 711	· 건설인재평생교육원 (서울시 강남구 언주로 711) · 경북 건설회관 (대구시 수성구 동대구로 74안길 11) · 전북 건설회관 (전주시 완산구 백제대로 280)	02-3485-8257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표자	소재지	교육장소	연락처
윤학수	서울시 동작구 보라매로 5길 15	· 전문건설회관 (서울시 동작구 보라매로 5길 15)	02-3284-1080

건설공제조합			
대표자	소재지	교육장소	연락처
박영빈	서울시 강남구 언주로 711	· 건설경영연구소 (충북 충주시 노은면 감노로 1939)	043-850-4522

건설기술교육원			
대표자	소재지	교육장소	연락처
박민우	인천시 남동구 소래로 688	· 인천분원 (인천시 남동구 소래로 688) · 강남분원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7길22)	032-463-0253

건설산업교육원			
대표자	소재지	교육장소	연락처
김일중	서울시 강남구 강남대로 42길 13	· 양재교육장 (서울시 강남구 강남대로 42길 13 호성빌딩) · 건대교육장 (서울시 광진구 능동로 13길 39 한아름빌딩)	02-575-7123

건설공제조합			
대표자	소재지	교육장소	연락처
유종범	경기 김포시 장릉로 42	· 협회교육장 (경기 김포시 장릉로 42)	02-847-6114

3. 건설공사대장 전자통보제도

원도급 공사 또는 하도급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체가 건설산업종합정보망(kiscon)을 이용하여 발주자에게 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을 전자적으로 통보해야 함. 미통보하거나 거짓으로 통보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됨.

- **관련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제6항, 시행령 제26조

- **통보대상** : 원도급(도금액 1억원 이상) / 하도급(도금액 4천만원 이상)
※ 재하도급공사는 통보대상이 아님

- **통보기한** : **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 변경(추가)사항이 발생한 경우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 통보방법

키스콘(www.kiscon.net)에 접속 → 건설공사대장전자통보 바로가기 선택
→ 건설공사정보시스템에 건설업체로 로그인 후 공사대장을 통보
(문의 ☎1588-8456)

■ 행정처분 위반내용 및 처분근거

위반내용	행정처분	처분근거 조항 및 조문
건설공사대장 미통보	시정명령	건설산업기본법 제81조제3호 법 제22조제6항을 위반하여 건설공사 대장의 기재사항을 발주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
건설공사대장 미통보 시정명령 불이행	과태료 1~3차 각 100만원	건설산업기본법 제99조제11호 법 제81조제3호의 사유로 인한 시정 명령이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을 해당 공사 완료일(준공일) 까지 발주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보한 자	과태료 1차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400만원	건설산업기본법 제99조제3호 법 제22조제6항에 따른 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을 해당 공사 완료일까지 발주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보한 경우

4.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교부

수급인은 하도급계약을 할 때 하수급인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정한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교부하여야 함

- **관련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2항, 시행규칙 제28조 제3항

■ 보증서 교부의 예외적 허용

- 1건의 하도급공사의 하도급 금액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
-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한다는 뜻과 그 지급의 방법 절차에 관하여 발주자·수급인 및 하수급인이 합의한 경우

■ 위반행위별 행정처분 및 규정

위반내용	행정처분	처분근거 조항 및 조문
하도급 대금지급보증서 교부 불이행	시정명령	건설산업기본법 제81조제4호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에 따른 건설업자로서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영업정지 2개월 또는 과징금	건설산업기본법 제82제1항제8호 법34조제2항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주지 않은 경우